

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공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6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1. 처분당사자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2. 처분내용 : 다음 ①시설·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

① 시설·장소·대상	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		근거법령 (처분근거)
	관리자·운영자	이용자	
▶ 실내 ¹⁾ 전체	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(관리자) 시설·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(운영자)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	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 (이용자)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 장소, 운송수단, 지역에 출입·방문한 모든 자	▶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의2 (특정 장소·시설 대상) ▶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(운송수단) ▶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(특정 지역)

1) 실내 :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
3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~4호
4. 처분기간 : 2022. 9. 26. ~ 별도 해제 시까지
5. 처분사유 :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
6.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

가. 과태료 부과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 3

나. 과태료 부과권자 : 시장·구청장

다. 단속내용 : 허가된 마스크¹⁾로, 올바르게 착용²⁾했는지

- 1) 허가된 마스크 :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, ‘의약외품’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, 일회용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

* 전자식 마스크 :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
※ 단, 망사형 또는 벨브형 마스크,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- 2) 올바르게 착용 :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

라. 단속방법

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※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
-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*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(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)
- * 위반행위 적발 →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(요청)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 이내)
- 단, 현장 단속 외,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(장소)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

마. 부과금액

-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
-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이하 (1차 위반 50만 원, 2차 위반 100만 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) 과태료 부과

바.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
1)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

-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*

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-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2)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

-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
-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-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-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-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-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2. 9. 26.(월) 00:00

8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

10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

[참고]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

※권고사항이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- ① 발열, 기침,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*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
 - 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 등
-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 - 사람이 많을수록,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